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9가합538321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고**1.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박경호

**피고**1. D 주식회사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전성훈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변론 종결**2021. 5. 28.

**판결 선고**2021. 7. 2.

**주 문**

1. F 주식회사의 피고 E에 대한 2015. 11. 10.자 2,000,000,000원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E와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4,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584,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제1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제1 선택적 청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대한 2015. 11. 10.자 2,000,000,000원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4,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584,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제2 선택적 청구] 주문 제1, 2항과 같다.

[제3 선택적 청구]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2015. 11. 10.자 2,000,000,000원의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4,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584,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의 F, 피고 E에 대한 채권

- 1) A은행은 2009. 6. 26. G 주식회사(이하 'G'라 합니다)에게 40억 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최고 연 23%, 변제기 2010.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과 피고 E는 2009. 6. 29. I, J과 함께 G의 A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G는 2010. 12. 26.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하여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A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3) 원고 파산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G와 F, 피고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496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대출금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자만 남아 있다고 보아 2015. 8. 19. "F과 피고 E는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3,297,41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F과 피고 E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주식회사 B(이하 'B은행'이라 한다)의 F, 피고 E에 대한 채권

- 1) B은행은 F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E는 2007. 3.경 F이 B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채무를 11,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   |               |        |                |               |       |       |
|---|---------------|--------|----------------|---------------|-------|-------|
| ① | 2006. 1. 16.  | 종합통장대출 | 800,000,000원   | 2007. 1. 16.  | 연 16% | 연 26% |
| ② | 2007. 4. 3.   | "      | 4,500,000,000원 | 2008. 4. 3.   | "     | "     |
| ③ | 2009. 12. 21. | 일반자금대출 | 2,420,000,000원 | 2010. 12. 21. | "     | 연 28% |

- 2) B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고, F은 위 각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3) 원고 파산자 B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F 및 피고 E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96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7. "F은 위 원고에게 12,286,813,771원 및 그 중 1,164,619,849원에 대하여는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11,122,193,922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고, 피고 E는 F와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위 돈 중 11,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F와 피고 E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의 F에 대한 채권**

1) C은행은 2006. 4. 24. F에게 1,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 등은 F의 C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0. 4.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3) 원고 파산자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F, 피고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83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6. "F은 위 원고에게 1,199,541,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4.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는 F와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위 돈 중 1,690,000,000원과 그 중 1,199,541,186원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와 피고 E가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341호), 위 법원은 2015. 10. 8. "F의 항소는 각하하고, 피고 E는 위 원고에게 308,068,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F와 피고 E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F의 피고 D에 대한 2015. 11. 10.자 금전지급행위**

1) F은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들에게 F 소유의 광주시 K 외 25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4. 4. 24.

L지역주택조합(이하 'L조합'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L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7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3. 25. 매매대금이 60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2) L조합은 2015. 3. 12. M 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PF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600억 원과 지연보상금 30억 원 합계 630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36,89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2015. 6. 29. 원고들에게, 2,527,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해지를 위하여 가압류채권자들에게, 9,760,000,000원을 체납 공과금 등의 납부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9,273,000,000원과 지연보상금 30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F에게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6. 29. L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36,890,000,000원을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대출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에 충당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제충당한 결과 2015. 6. 29. 기준 F에 대하여 A은행은 3,323,419,120원(= 미지급 이자 3,297,419,120원 + 가지급금 26,000,000원), B은행은 12,294,513,771원, C은행은 550,617,126원의 각 대출금 또는 연대보증금채권이 남아 있었다.

4) 한편, F은 피고 E의 부탁을 받고 L조합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0억 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L조합은 2015. 11. 10.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위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F의 2009년도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69,912,793,055원이나 부채총계가 73,874,019,531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0년경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주식회사 N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7,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 가. 제1 선택적 청구

F은 2015. 11. 10. 채무초과상태에서 L조합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여 증여하였는바, F의 위 2015. 11. 10.자 피고 D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는 F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들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D은 원고 파산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4,000,000원, 원고 파산자 B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584,000,000원, 원고 파산자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제2 선택적 청구**

F은 2015. 11. 10.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와 통모하여 피고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D에게 위 2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F의 위 2015. 11. 10.자 피고 E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는 F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수익자인 피고 E 및 전득자인 D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제3 선택적 청구**

피고 E는 2015. 11. 10. 채무초과상태에서 F으로부터 20억 원을 변제받으면서 F에게 위 변제금 20억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 D에게 위 20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피고 E의 위 2015. 11. 10.자 피고 D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는 피고 E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수익자인 피고 D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1, 2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9. 당시 F에 대하여 A은행은 3,323,419,120원, B은행은 12,294,513,771원, C은행은 505,072,995원의 각 대출금 또는 연대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후 위 각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2) F의 2009년도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69,912,793,055원이나 부채총계가 73,874,019,531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0년경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주식회사 N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함께 2015. 11. 10. 당시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도 대부분 지급받았으므로 F의 적극재산으로 L조합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015. 11. 10. 당시 F이 앞서 본 원고들에 대한 채무액 합계 161억 원<sup>1)</sup> 상당을 초과하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은 피고 D에게 20억 원을 지급해 준 2015. 11. 10.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사해행위 여부**

1) F의 피고 D에 대한 증여행위 여부(제1 선택적 청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E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지로 한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300억 원에 양도하고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20억 원을 F으로부터 변제받으면서 당시 피고 E가 피고 D에게 20억 원을 대여해주시기로 하여 피고 E의 단축급부 지시로 F이 L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20억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어서, F은 피고 E에게 위 20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 D은 피고 E로부터 위 20억 원을 차용한 것이지 F이 피고 D에게 위 20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F이 2015. 11. 10. 피고 D에게 2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4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는 200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부지로 한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개인의 지위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2002년경 자신이 주주로 있는 F에게 위 사업권을 계약금 30억 원, 총 대금은 300억 원으로 하되, 잔금은 위 사업에 관한 사업 승인시 다시 정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F으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명의로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E는 F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L조합과 위 매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2015년경 L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F으로부터 L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사업권양도대금의 일부로 변제받기로 하였고, 이에 F이 L조합에게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피고 E가 지시한 피고 D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 E게 위 사업권 양수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E의 지시로 피고 D의 계좌로 위 2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 D에게 위 20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F이 피고 D에게 위 2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제1 선택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F의 피고 E에 대한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 선택적 청구) 가) F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 E에 대한 사업권 양수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5. 11. 10. 당시 L조합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 20억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L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매매대금 20억 원 전액을 피고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② F의 피고 E에 대한 위 사업권 양도대금채무는 2002년경 발생한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이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도 아닌 점, ③ F의 2015. 11. 10. 당시 대표이사 O은 피고 E의 조카로 피고 E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 E에게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피고 E는 F과 함께 원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이자 F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는 자로서 F의 자금사정과 F과 L조합 사이의 매매계약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F과 피고 E는 이미 위 2015. 11. 10. 이전에 원고들로부터 대여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한 상태였는바, L조합이 F에게 위 20억 원을 지급하면 원고들에게 강제집행 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F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와 통모하여 원고들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E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변제행위는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E, 피고 E를 대신하여 F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지급받은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E는, ㉠ L조합이 F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F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 L조합으로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 변제받으면 F 및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들었으며, ㉢ 원고들이 L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F의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다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을 것임에도 F의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남게 된 것이고, ㉣ L조합으로부터 F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바, 피고 E로서는 2015. 11. 10.경 F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무가 이미 전부 변제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 E가 F으로부터 20억 원을 변제받는 행위가 원고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7,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와 F은 이미 원고들로부터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한 상태였고 위 2015. 11. 10. 무렵 원고들이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F의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거나 면제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② 원고들은 L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는바, 원고들의 충당순서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L조합으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D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E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F의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위 2015. 11. 10. 무렵 피고 E와 피고 D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당시 이율이나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 D은 피고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D의 임직원도 피고 E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D이 2019. 1. 4.자로 작성한 대여금상환이행확약서(을 제4호증의 1)나 피고 E가 2019. 5. 31.자로 작성한 영수 및 변제확인서(을 제6호증)는 피고 E나 피고 D의 필요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각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E로부터 위 2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 D이 피고 E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 E와 피고 D 및 F과의 관계, F의 당시 채무상태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로서는 L조합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이 원래 F이 L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일부였는데 F이 위 돈을 직접 수령하게 되면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집행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고자 피고 D이 L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위 20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E가 변제받은 돈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선의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F의 피고 E에 대한 20억 원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한편 사해행위가 현금의 변제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E와 전득자인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파산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4,000,000원, 원고 파산자 B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584,000,000원, 원고 파산자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제2 선택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제3 선택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1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2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원

**판사**배온실

**판사**구현정

1) 2015. 6. 29.을 기준으로 하면 16,168,550,017원(= 3,323,419,120원 + 12,294,513,771원 + 550,617,126원)이 된다.